
지장배전선로 이설 비용의 부담 주체

1 질의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 등)이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지장물은 사업시행자가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관계법령 등에 설치자의 부담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은 그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2.24. 토지정책과-1120】